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6. 5(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회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30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이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2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제21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모두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공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와 (주)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3-22-054)**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와 (주)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은 안건과 시정조치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와 (주)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와 (주)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는 등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작년 9월~12월까지이며, KT·SKB·LGU+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 건 총 61만 6,243건 전체를 대상으로 각사의 해지제한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해지 지연·누락 행위에 관한 건입니다. 유선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희망자에 대한 해지지연 또는 누락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 KT는 해지누락 사례가 총 해지건수의 10.4%, SKB는 해지지연 사례가 67%에 해당되며, LGU+는 지연·누락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KT는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요금을 감액처리하고, SKB는 해지희망일 이후 기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각각 부당요금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자통보 미준수에 관한 건입니다. 유선3사가 해지 접수·완료 시 각각 1회시 해지희망자에게 문자를 통보하도록 한 이용약관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한 결과, KT는 총 해지건수의 66.7%, SKB는 67%, LGU+는 95.9%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장비 수거기한 적용 여부입니다. 해지 후 장비 수거기한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한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했는지 조사한 결과, KT는 기존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SKB와 LGU+는 장비수거 소요기한을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장비 보관의 책임을 해지 이후 무기한 이용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다음 위법성 판단입니다. 유선3사의 이용약관에는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3사는 해지 과정에 문자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선3사에게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KB와 LGU+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수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해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선3사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5호-나목-5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한위”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시정조치(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제53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각사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각사 의견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자정책국의 시정조치 방안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배포해 드린 시정조치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선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제53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사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사·제재 건의 경우 KT는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모두 소급하여 요금을 감액처리하였으며, SKB는 해지 지연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실제 요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양사 모두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과, 또한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서 해지과정의 문자 통보와 장비수거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한 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정책국의 시정조치 방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지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3사에게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완료 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며, SKB와 LGU+에게 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하도록 이용약관 변경을 명령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조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 작년 6월이지요?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6월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리고 실제로 개정한 것도 6월에 한 것입니까?

○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 8월과 12월에 실제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작년 8월 이후에 하고 나서 첫 번째 점검해 본 것이지요?

○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 맞습니다. 9월~12월까지 4개월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점검한 것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과징금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반된 숫자들을 보면 문자통보를 미준수한 것이 3사가 각각 60% 이상, 95% 이상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만약에 과징금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과 연관시키기 어려운 사항이라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정액과징금에 해당합니다. 그럴 경우에 현행 규정상 최대 8억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제까지 첫 조사에서 위반된 것들을 적발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습니까?

○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 그런 사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단지 작년에 스마트TV 건은 경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해지제한 행위라는 것이 통신영역에 있어서는 초고속인터넷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사가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들, 절독을 했는데 계속 투입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왔고, 그것이 최근에 많이 없어진 상황으로까지 오는 데 있어서 수

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해지제한 행위라는 것 자체가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영업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시정조치 수준에서 해결할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액과징금을 매겨야 할 일인가를 보면 이것은 정액과징금을 매겨서 정말 두 번 다시는 해지제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용자보호에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해지제한 행위가 상당히 야비하고 악랄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첫 번째 조사에서 첫 번째 적발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해지제한에 대한 약관 개정이 작년 8월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약관은 실제 개정을 했지만 판매사나 관련 하부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던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이것은 첫 사례이고 또 약관 개정이 적용된 이후 곧바로 점진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선처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 문제가 재발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중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용약관 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피해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용약관을 변경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해지제한 행위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피해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적 수단으로써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권고를 하는데, 이용약관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들이 조사 들어갈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행정청에 대한 권위 훼손으로 봐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태 자체가 아주 비겁한 행태다, 그리고 행정청에 대한 기본적인 무시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면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양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 홍성규 상임위원

-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금에서 감면했거나 안 받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지요?

○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나 사실상 경제적 피해는 없을망정 정신적인 피해는 있는 것이지요?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우리가 이런 피해가 우려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라고 명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주자는 것인데, 만약에 첫 사례라서 또 경제적 피해도 없으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자고 한다면 강력한 행정지도는 병행될 필요가 없습니까?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후 내용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12월까지 사항이고, 12월 이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곧바로 실태점검을 해서 재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는 이용자들 해지를 늦게 하는 것도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장비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고 곤란합니다. 저도 한 번 당해 봤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이것을 어디에 놓아둬야 할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양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기는 하나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하고, 또 지금 국장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은 경고를 하는 셈 치고 사무국의 시정조치 방안을 받아들이되, 강력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현저하게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실태점검을 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현재 이용자정책국의 조사요원들이 시장 과열 현상에 있어서 보조금 문제만 해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또 실태조사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쪼개진 방송통신위원회에 아주 과부족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차로 시정조치 정도 내려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부분들을 잡으려고 하면 엄청난 행정력의 소모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원으로, 현재 이용자정책국의 전체 조사요원으로 본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일벌백계의 개념으로 가 주어야 하고, 적어도 이 부분까지 실태점검을 하면서 또 행정력을 소모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선에서 끊자, 그러면 정확하게 법에 따라 정액과정금 부과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있어서 발붙일 수 없는, 해지제한 행위를 없애는 이러한 단호한 결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시정명령 이 정도 수준에서 가면 또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조사 나올 때까지는 이 행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에서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1명이라도 더 가입자를 안고 가려는 끊임없는 싸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번의 조치가 단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법이나 규정으로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첫 사례라도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권고를 했고 사업자들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약관을 개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나가는 규제당국으로서도 그런 정도의 립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처음부터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제대로 제재해서 발본색원할 것이냐, 처음이니까 봐 주고 두 번째 볼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반전의 개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뿌리 뽑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개 한 개라도 이후에 보조금도 정말 갈 길이 먼데 이런 해지제한 행위 문제에서는 행정적으로 일단락 짓자는 의미면 저는 정액과징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제 말씀의 포인트가 첫 번째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고를 했고 그것을 사업자들이 받아들인 단계로 한 단계 진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두 단계까지 욕심을 내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첫 번째 사례라서 봐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 가지 용어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시정조치 방안해서 <1>번 뒷부분에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중지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행위냐라는...

○ 이경재 위원장

- 행위를 하지 않는데 행위 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하고’ 이렇게 되어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중단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고치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어디는 전혀 없고, 어떤 부분은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원인은 그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지시나 지침이 잘못 내려가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보도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해서 강력한 경고를 주는 입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나.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3-22-055)

#####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한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되, 아래 사항을 재허가 조건에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 재허가 조건에 추가할 조건을 말씀드리면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미래부에서 요청시 제시한 허가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주)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이 방통위에 재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주)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은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으로 법인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21일 미래부에서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해 왔고, 5월 27일 SO 등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보고드리고 마련한바 있습니다. 5월 30일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항목별 구성과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를 1,000점 만점 중 400점으로 구성해서 반영을 했고, 이후 법정 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등 8개 항목에 대해 600점을 부여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사전동의 기준 점수가 650점이었는데 670.68점을 획득해서 기준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해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디지털 전환율 및 지역채널의 자체제작비율이 저조하며,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부의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동의는 하되, 저조한 지역채널의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아래 사항을 재허가 조건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한 추가 조건의 내용은 의결주문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론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 및 의견에 따라, 미래부의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동의하되, 지역채널의 자체제작 관련 사항 개선을 ‘재허가 조건’에 추가하는 것을 사전동의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사전동의 심의결과를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으로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기준, 심사위원회 평가점수와 관련 법령, 미래부 요청사항과 재허가 조건 등이 별지로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부가 먼저 심사를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부 심사기준과 우리 심사기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은 심사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심사기준에 대해 달리 두지는 않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기존의 재허가 수준….

○ 홍성규 상임위원

- 똑같은 것을 가지고 미래부도 심사하고 우리도 심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코미디 아닙니까? 뭔가 달라야지요. 그리고 촉박해서 그랬다고 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촉박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기준이 똑같은 것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촉박한 것은 실무자들이 느꼈던 것 같고, 말씀드리면 정해진 법정 심사대상목의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합니다. 같게 가지만, 다만 저희들이 사전동의를 할 때 강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부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수행능력을 볼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공적인 요소를 좀 더 강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항목은 같지만 심사단들이 사전동의를 취지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어차피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부가 주로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무 또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또 시청자들과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 부분에 관한 것을 고민해서 방법을 바꿔라,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둘 다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심사기준을 바꾸라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허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촉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6월 13일까지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오늘 회의에서 만약 우리 위원들이 부동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한다면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 6월 13일까지 허가가 안 나면 불법방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허가 유효기간에 임박해서 이루어졌을 때 허겁지겁 이를 태면 요식 행위를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든지,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들이 부동의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도 덧붙이면 홍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2013년 6월에 SO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나 라고 하면 그것이 올해 심사에 있어서 콘셉트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율을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봐 주어야 한다, 어쨌든 올 초에 지상파가 다 디지털 전환을 기본적으로 완료했고, 그러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면 디지털 전환율에 배점을 많이 주고 디지털 전환율에 대한 평가를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건부를 붙일 때도 디지털 전환율을 주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붙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향하는 공공성·공익성이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미래창조부가 지향하는 산업의 영역이 철학과 콘셉트가 다를 수밖에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적인 철학과 콘셉트가 그 해 그 해 심사에 콘셉트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 가야 하는 측면에 대해서 홍성규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 이후에 첫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미숙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그다음에 촉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재 실무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과장과 구성원들이 한 과에 6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시점이니깐, 국장!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원 확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김용일 과장이 맡고 있는 것이 예전에 3개 과가 하던 일을 한 과가 하고, 한 과에서도 수도 반 토막난 6명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행부와의 이야기하고 국회와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 내 인원 재배치 문제도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안정적인 토대에서 가자, 촉박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실수하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고민해 봅시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두 분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조직 개편 이전 2012년 12월 12일에 방통위에 접수된 건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한 사전동의 절차를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특히 심사 기준이나 철학 그리고 시간, 절차의 신속성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 5월 27일 SO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 당시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가 사전동의의 실효성 있는 절차 진행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산업계나 우리가 정책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가치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에 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가 동시에 사전 동의와 미래부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한 가지, 또한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서 충분히 보자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기부터는 말씀하신 부분 심사기준의 차별성, 반영의 초점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차적인 신속성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실무진의 업무부하와 관련해서는 조직 확충 부분은 당연히 고민하고 함께 해 나가고 저희들도 도움 받고 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구성하고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아서 그것 자체가 저희들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실수 없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염려를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조직 부하는 제가 또 열심히 건의도 드리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김준상 국장께서도 정리하셨는데 미래부와 심사기준이 달라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을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기준 자체는 법에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달리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통위가 훨씬 더 방송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중에 예를 들어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좀 더 철학을 달리 해서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차별성, 특화성을 우리가 견지해야겠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표현으로 잘못 왜곡될까 봐 그런 점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사전동의가 이루어지는 첫 사례가 되어서 사실은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중간에 정부조직 개편 때문에 많이 시간이 지연된 것도 있지만 실무자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노력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처 간에 협조하는 자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금 사전동의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전동의 절차를 간명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방통위 쪽에서 이미 그 내용을 신청했고 여기에서 사전심의를 한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주문이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래과학창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동의한 것을 미래과학창조부에서 또 본격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넘겨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보완해서 미래과학창조부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론상으로 미래부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 저희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동의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미래부가 이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또 다시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조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미래부와 미리 이야기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건을 거부하거나 반영 안 할 시점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하여튼 절차상 분명치 않게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자체제작에 관한 것은 방통위가 자체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냈던 상관없이 그쪽에서 제출만 하면 된다는 것이 과연 실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부대조건으로 했으면 부대조건이 성립됐는지,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명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절차상으로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건을 요구했고, 그것이 재허가·재승인 조건화하면 1개월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사후적인 체크 부분이 방통위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지만 이 취지를 따른다면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1개월 후에 미래부로부터 그 실적에 대해 저희들이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부대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실행여부가 애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거나 서로 충족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 이경제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원회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거부 처분은 2011년 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기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박스에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대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7가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밑줄 친 부분 이외의 정보는 이미 소송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청구대상 자료는 첫 번째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 두 번째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대상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세 번째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네 번째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인권센터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방통위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대상 자료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만 이 가운데 박스에 보시는 대로 밑줄 친 부분 이외의 정보는 이미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청구대상이 되는 자료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한 각 승인장 교부 시점의 1% 이상 주주 현황, 두 번째 2010년 12월 31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한 승인장 교부시까지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한 기타 주주 변경을 신고한 내역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기타 주주 변경을 허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승인장 교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와 위원회의 승인장 교부 심사결과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납입금 증명서류나 자료 일체는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것은 2011년 1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6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방통위에서 일부 정보는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7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5월 25일 1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부 승소의 내용을 보시면 정보는 공개하되,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토록 했고, 단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공개토록 했습니다. 이후 방통위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각되었고, 2013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방통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5월 29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된 제3자(승인신청법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이 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 관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6월 4일 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법인이 11개입니다만 이 11개 중에 (가칭)주식회사굿뉴스(최대주주 CBS)를 제외한 10개의 신청법인이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보받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의 신청법인 중 10개 신청법인이 비공개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음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 청구는 2012년 6월 18일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6월 27일 방통위는 일부 정보의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을 했고, 9월 25일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2013년 5월 23일 1심에서 언론인권센터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기본 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방법과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코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부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승인 관련한 심사자료 일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내용은 해당 자료 중 주주의 주민번호, 단 동명이인은 주민번호 앞자리는 공개토록 했습니다. 주주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공개토록 판결했고, 심사자료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승인 신청법인들이 심사시 제출한 서류로 특정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방안을 말씀드리면 11개 승인 신청 사업자별(종편 6개사, 보도PP 5개사) 사업계획서 본문 그리고 별첨, 부속서류 전부를 공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판결내용대로 주주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은 주민번호 앞자리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대상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에 관한 내용에 판결내용은 해당 자료 중 역시 주주의 주민번호(단, 동명이인은 주민번호 앞자리를 공개) 및 주소는 제외하고 공개토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방안은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대상 법인별로 사업계획서 본문 별첨 자료 중에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코자 하고 판결에 따라서 주주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역시 제외하고, 동명이인은 주민번호 앞자리를 공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대상 법인의 중복 참여주주 현황은 판결 내용은 해당 자료 중 역시 주주의 주민번호(동명이인은 주민번호 앞자리 공개) 및 주소는 제외하고 공개토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별로 사업계획서 본문 별첨자료 해당 부분인 신청법인의 명세에 수록된 주주 구성 현황 중 중복참여 주주 해당사항을 공개코자 하며, 역시 주민번호와 주소, 동명이인에 관한 사항은 아까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에 대해서는 판결에서는 해당 자료를 공개토록 판결을 했고, 조치 방안은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별로 사업계획서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주주 이사회 결의서를 판결에 따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한 각 승인장 교부 시점의 1% 이상 기타 주주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내용은 해당 자료 중 개인 주주의 성명, 주민번호,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판결했습니다. 조치방안은 역시 판결내용에 따라 종편

4사 승인장 교부 신청시에 제출한 1% 이상 기타 주주(개인주주 제외) 현황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편 선정 이후 승인장 교부시까지 선정 4개사의 기타 주주 변경신고 및 허용내역입니다. 판결내용은 해당자료 중 개인 주주의 서명, 주민번호,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판결을 했습니다. 조치방안은 역시 판결내용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자 선정 이후 승인장 교부 신청시까지 종편4사의 기타주주(개인주주 제외) 변경 신고 내역과 이에 대한 위원회의 허용 내역을 공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원회의 승인장 교부 심사 결과자료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은 심사결과 자료를 속기록으로 특정하여 해당 속기록을 공개토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편4사 승인장 교부 관련 방통위 해당 회차의 속기록을 공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개 방법을 말씀드리면 역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방대하므로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고 열람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공개일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료는 2013년 6월 10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에 보시는 대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공개 요청을 한 사업자 자료는 2013년 7월 12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에 보시는 대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로 인한 확정 판결 이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 후 정보공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3자의 비공개 요청 유무에 따라 공개결정일로부터, 보고드린 대로 10일 이내에 혹은 최소 30일 이후 공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관련 법령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전쟁에서도 지고 패전 처리도 그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과다하게 선정한 것이 엄청난 방송시장의 문제가 되고,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선정과정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업자들과 무슨 꿍꿍이속이 있다는 인상을 보이면서 끌어안고 있다가 법원에 의해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또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편 관련한 선정과 정보공개 재판에서의 실패는 방통위 5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실제적인 실패이고 절차적인 좌절인 것입니다. 김준상 국장, 이번에 5.18 사태에 북한이 지원했다는 종편의 보도 소동을 듣고 있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값싼 콘텐츠로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다가 그런 재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과다 선정을 할 때부터 예고된 참사인 것이지요. 2011년 5월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임위원은 어느 분도 과다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시다. 제1기에 속해 있던 양 위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퇴장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새로 와서 절차적인 승인장 교부 등에 관계를 했지만 선정시에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2년 전에 제가 승인장 교부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처럼 우리보다 몇 십 배 큰 면적의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우리보다 10여배가 큰 경제력에서도 종편이라는 것이 전국 규모로 결국은 4~5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개의 전국채널지상파에다 4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을 합쳐서 무려 9개가 되었다, 그러면 광고시장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최시중 위원장 때 KCC 업무보고에 보면 2015년에 광고시장이 15조원이라고 쓴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편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고 광고시장은 점점 늘어난다고 그렇게 과다 선정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 속기록을 다시 뒤져봤지만 정치적으로는 논란을 회피하고 거대신문사를 도와주기 위해 묘수를 부렸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타락이다, 김 국장도 기억할 것입니다. 재판으로 치면 집행유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를 치열하게 다투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정쩡하게 집행유예로 다 한 번 해 봐라, 시장이 걸러서 망하든 흥하든 여과할 것이다, 우리 행정은 모르겠다, 이것이 종편 선정의 기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미디어는 적분(積分)에서 미분으로 가고 있다, 수학으로 치면 미분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이에서 대형TV와 신문이 광고로 유통을 매개하던 시대와는 달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기술, 정보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분화, 기능화, 미분화되고 그래서 무료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다, 거기에 종합편성이라는 종합선물세트를 쥐도 정병국 당시 문방위원장 말처럼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종합선물세트를 찾겠는가”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은 틀림없는 자원배분의 왜곡이다, 광고시장을 교란하고 광고쟁탈을 위해 언론이 왜곡되고 이런 것을 방기한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용일 과장, 지금 종편채널에서 넘쳐나는 시사평론가들이 출연료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못 들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상파정책과장 있습니까? 대략 10여만원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3천억에서 4천억원대의 자본금을 지르고 1년에 1,300억, 700억원, 500억원 이렇게 적자를 내기

때문에 비용 삭감을 위해서 도리 없이 그런 싸구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출연료를 깎는 것입니다. 그때 신용섭 위원께서 “콘텐츠만 많이 제공된다면 종편 과다 선정도 나쁘지 않다”고 나에게 반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항산(恒産)이 없이, 종편이 선순환되는 부의 축적이 없이 좋은 콘텐츠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질 나쁜 콘텐츠 때문에 대단한 소동이 올 것이라고 제가 반론을 했는데 2년 사이에 그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관여했다고 하는 탈북자 일부의 증언과 같은 것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종편 소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싸구려 출연들의 ‘나비효과’는 품격도 내공도 모자란 청와대 대변인이 기용되고, 워싱턴에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추태를 부리는데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 1년 사이에 그런 값싼 출연료, 허구한 날 틀어 제끼는 정치중독의 해설, 그런 것으로 해서 일그러진 스타가 태어나고 그 사람이 정권에 기용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이 결국은 청와대 대변인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변인 파동에 그런 꼴뚜기를, 치어(稚魚)를 부화시킨 것은 방통위다, 그런 자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상 국장, 지금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재판 판결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역시 국민의 알권리, 정책의 투명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개인정보도 좋고 영업비밀도 중요하  
다, 그렇지만 방송사는 과자공장이나 양말공장이 아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 형성에 절  
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그 공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주주가 누구인  
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법원의 기본 취지  
입니다. 그것이 이번 판결을 정당화시킨 부분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  
리들은 5공, 6공식의 공무원들로 대처를 했습니다. 5공, 6공 공무원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개헌 현판식을 도로교통법으로 틀어막는, 여타의 영업비밀들이 다 보호되기 때문에 방송에  
서의 영업비밀도 죽어도 우리가 지켜 주겠다, 이런 타성적인 생각으로 임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은 1, 2, 3심의 판결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판단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더  
수구적이어야 할 법원이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업자들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판도라상자를 열면 방통위가 폭발할 것처럼 인식을  
주고 결국 방통위 신뢰를 손상하고 체면을 손상시킨 것은 누구냐, 우리가 자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도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영업비밀,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투명성, 법원이 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보고  
우리 자체를 열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 위원님!

○ 양문석 상임위원

- 답답한 부분입니다. 김충식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대법원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하면서 가지 말자 1, 2심 다 지고 대법원 가서 바뀔 것 없다고 했었을 때 굳이 판례를 보자고 갔던 것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비용 총 얼마 들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건당 500만원~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우리가 다 대주어야 하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다 대는 것이 아니도록 일정한 분담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서 세금을 낭비한 부분들도 우리가 반성해야 하고, 1심, 2심으로도 충분했던 내용들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과정 속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있었던 부분들도 결국은 모든 것들을 법원이 판결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깔끔히 해결됐고, 1개 남은 것이 뭐냐 하면 공개날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10일과 30일의 간극을 둔다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여기에서 공개날짜를 한 달 뒤 그다음에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일 뒤로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최소 30일의 간극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3자한테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3자의 반론은 1심이나 2심 과정이나 대법원 가기 직전의 반론은 의미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그러면 대법원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대법원에 대한 반론은 아니고 저희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내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최종심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30일은 불복구제절차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의신청, 행정심판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법원 결정을 따랐는데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법률 해석상으로는...

○ 양문석 상임위원

- 법률 해석상 기본적으로 최종심의 나온 것 아닙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최종 심의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우리가 한 행위 거부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부처분은 물론 실제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 거부처분이지만 공개에 대해 대법원이 취지를 가지고 우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정확히 냈기 때문에 제3자, 그러니까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당사자는 다시 그 공개여부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것이 공개법에 보장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준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우리가 거부했던 내용들을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개했던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한다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 봤지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서, 그리고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 소송이 성립되니까? 즉, 30일이라는 내용은 불복하는 정보공개 대상을 구제해 주기 위한 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을 구제해 주기 위한 구제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면 계속해서 시간 끌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적 자문을 제대로 다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 이후, 30일 이후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법률

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공개일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서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실제적으로 소송이 될 수 있다, 안 된다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각하시킬 것이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오늘 결정하는 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거부처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행위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정보공개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제3자인 이해당사자가 다투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규정된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방통위가 하게 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보고사항이지,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아닙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방통위에 보고드리고 실무국까지 전결규정에 따라 사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전결규정을 방통위 위원회로 가져올 수 있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지금 규정이 있으니까 전결규정을 개정해야겠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말의 의미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0일의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1심과 2심, 2심과 3심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요청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갈까 말까인데,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개결정을 하기로 했으면 어쨌든 저쪽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한 현재의 공개행위를 바꿀 의지나 바꿀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우리는 공개하겠다고 보고 드렸고 저희들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제3자가 다투는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명확하기 때문에 10일이든, 30일이든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 최종심에 대한,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 시기를 재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것이 굉장히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정보공개하라는 것을 해 준 것이고, 그런데 공개하게 될 경우에는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요청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것도 또 다른 법에서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하라는 원칙은 이미 정해져서 여기에 보고하는 것인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굉장히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한 달까지 기다리라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법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법조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붙임> 마지막 법조문 제21조를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우리의 거부처분...

○ 홍성규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규정을 따라서 30일 후에 7월 12일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오늘 보고는 접수하고, 지금 양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빨리 능력 있는 법무법인에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나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법과 배치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을 빨리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판례 이야기가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양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누구를 두둔하겠다는 생각 보다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저도 얼마 안 해 봤지만 2년 조금 해 봤는데, 역시 법에 따라 규

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유의 일이니까 이 일에 대해서도 판례를 구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야기한 것도 사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공개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일함에도 늘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되,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찾아보라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절차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김준상 국장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규정에 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존중해서 공개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내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취지라고 보여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겠지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정보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실무진.... 분량이 상당한 페이지가 되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공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챙겨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김충식 부위원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양문석 위원님과 홍성규 위원님은 이 기회에 법적인 자문을 구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결정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공개로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법적으로는 김준상 국장, 이미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구했습니다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접수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별도로 따로...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지요. 오늘 이 보고는 접수하고 이것이 워낙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라는 것이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검토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고 이것은 보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원안대로 접수하고 거기에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에 관한 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든, 전체적으로 지역방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흥책들을 끊임없이 내놓았고, 그리고 규제 완화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KBS는 8개 지역에서 HD가 전송이 안 됩니다. 제작도 안 되고 전송도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디지털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역사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KBS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KBS 자본금 추가출자 요청을 KBS가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EBS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계속해서 높여갔었습니다. 법정자본금이 1,000억원인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EBS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해왔고, 마찬가지로 KBS가, 지역 시청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제작과 송출의 디지털 전환 부분들을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KBS 자본금 추가출자를 정부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KBS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KBS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디지털 전환 비용들을 자본금 추가출자 부분으로 빨리 해소해야 한다, 수신료 문제는 어느 세월에 될지 내일 당장 될지 아무도 모르는 첨예한 정쟁적 이슈로 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벌써 20년, 30년째 논쟁 중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현재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 있고 그 수단이 정부의 자본금 추가출자이면 추가출자를 통해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방송정책국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S의 법정자본금은 3,000억원이고 실질적인 현재 투자된 자본금은 2,02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00억원 정도 추가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작년 이전부터 제기되어서 사실은 저희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예산 당국의 예산 부담 때문에 번번이 저희들이 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통위, KBS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역시 재정당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열심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수도권 지역은 뭐든지 우선적 혜택을 받아왔고,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2류 국민, 3류 국민으로 자꾸 전락해 왔던 그러한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에서 오는 홀대와 소외라고 봅니다. KBS도 디지털 전환하는데 있어서 예산배분을 함께 해야지 서울지역은 디지털 전환하고, 그리고 송출기 제작 영역에서 장비 구입하면서 지역은 내버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권고를 못한 실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돈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수도권은 값이고 지역은 올입니까? 저는 예산당국에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조기 해소를 통한 평등한 시청권 확보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도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0분 폐회 】